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(BRT) 인프라 확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두고 있는 인력 2명(5급 1명, 7급 1명)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30일에서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5.10.30. ~ 11.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항의 “2025년 11월 30일”을 “2027년 11월 30일”로 한다.

별표 3에 제4호 중 “2025년 11월 30일”을 “2027년 11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신 · 구조문대비표 >

현행	개정안
제12조(한시정원) ① ~ ③ (생략)	제12조(한시정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(BRT) 인프라 확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<u>2025년</u> 11월 30일까지 별표3에 따른 한시 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7년</u> 11월 30일까지 ----- ----- --.
⑤ ~ ⑥ (생략)	⑤ ~ ⑥ (현행과 같음)

< 신 · 구 정원 대비표 >

[별표 3]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한시정원표(제12조)

현행		개정안	
4. 제12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 : 2025년 11월 30일)		4. 제12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 : 2027년 11월 30일)	
총계	2	총계	2
일반직 계	2	일반직 계	2
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1	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1
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	1	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	1